

의안번호	2212694
의 퇴 인	신장식 의원
회 답 일	2025.11.12.
추계번호	25B48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u>2개월</u>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u>2개월</u>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함</u> (제1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4	안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함</u> (제3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함</u> (제4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5	안 제15조(급여수준) 단서 신설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u>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함</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3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4	안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5	안 제15조(급여수준)		

2. 상세 사유

-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¹⁾
-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변경하면서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급여수준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관련한 기관부담금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규모와 이들의 평균임금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